

## 교육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

제정 1998. 7. 20

개정 2022. 9. 2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교육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은 교외 인사, 기관, 단체에서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무관장) 본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 및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
- ②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 ③ 교육대학원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장학위원회 구성) ① 교육대학원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②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대학원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3.1]

제5조(장학위원회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학원 장학금의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심의
2. 장학생의 선발, 수혜 기간, 지급액의 범위 결정 [개정 2018.11.27.]
3.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장학금의 종류·자격·수혜대상) 교육대학원의 장학금 종류와 자격, 수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자는 매학기 공고된 기일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휴학자 및 학칙 위배자
2. 성적 불량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제9조(장학생의 확정) 장학생의 확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제10조(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장학금의 환수) 장학금 수혜자중 제8조의 제1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

제12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교류협력장학금을 제외한 개정 또는 신설된 장학금은 2009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별표 1)은 2016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7조, [별표 1])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7.3.1, 2007.9.1, 2008.9.1, 2009.8.1, 2009.11.19, 2010.8.2, 2010.11.18., 2012.5.31., 2014.3.1., 2016.3.5., 2017.6.14., 2018.11.27., 2019.7.10., 2021.11.16., 2022.9.24.>

###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종류		지급액	대상자
진리장학금	A	수업료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직 교원</li> <li>•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관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의 정규직 근무자</li> </ul>
	B	수업료의 20%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공인된 교육기관 및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자
	C	수업료의 15%	다음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교육전문가 3급 이상</li> <li>• 한국어교원 3급 이상</li> <li>• 평생교육사 3급 이상</li> <li>• 보육교사 2급 이상</li> <li>• 준 사서 이상</li> </ul>
사랑장학금	A	수업료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 교직원,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li> <li>• 가톨릭교회 성직자 및 수도자</li> <li>• 본교 부속복지기관 및 부속병원 교직원</li> </ul>
	B	수업료의 25%	• 서울대교구 및 본교 법인 산하기관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
	C	수업료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톨릭교회 기타 법인, 교구 기관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li> <li>• 본교 졸업생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li> </ul>
봉사장학금	A	수업료의 30%	원우회 임원
	B	조교급별 해당금액	본 대학원생으로서 조교로 선발된 자
교류협력		수업료의 50%	본 대학과 교류협력(가톨릭교육지도자 양성 협약 포함)을 체결한 협력학교 현직교사(1개 학교당 2명 이내)
리더십 장학금		수업료의 15%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고 해당전공에 헌신·봉사하는 자
복지장학금		일정액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 자. (타 장학금 비수혜자 우선)
특별장학금		수업료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li> <li>•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일 경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자</li> </ul>
* 상기 지급액은 상한선이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이 확정한다. * 타 장학금과 본교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각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장학생 선발 해당학기에만 적용된다. * 각 장학금은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한다.			